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1012 호   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2. . .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박상돈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2년 3월 8일 |

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1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8일

발의자 : 박상돈, 임영은, 오영탁  
심기보, 이옥규, 육미선  
연철흠

## 1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등 채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공무원 특별채용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- 인용조문 정비 및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(안 5조)
  - 「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2” → 「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”  
충청북도지방경찰청 → 충청북도경찰청,
- 오탈자, 띄어쓰기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수정
  -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,
  - 사무관 → 팀장, 관계기관 → 관계 기관, 대해서는 → 대하여,
  - 위임규칙 → 위임 규칙, 수탁자 → 위탁 받은 자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,
-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- 호

다.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

라. 비용추계 : 관계없음

#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수립한”을 “세운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무원 특별채용) 도지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의2”를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충청북도지방경찰청”을 “충청북도경찰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보궐위원”을 “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무관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대해서는”을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자”를 “위탁받은 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·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| <p>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세운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<u>제4조의2(공무원 특별채용) 도지사</u><br/><u>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북한</u><br/><u>이탈주민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<u>제5조(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</u>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| <p><u>제5조(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2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<u>법률시행령</u> 제4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시·군에 구성된 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” 업무 담당 부서장</p>                   | <p>2. -----<br/>----- <u>법률시행령</u> 제42조의3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      |
| <p>3. (생략)</p>   |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4. 충청북도교육청, <u>충청북도지방경찰청</u>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4. ----- <u>충청북도경찰청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5. (생략)</p>   |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③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</u>.</p>   | <p>③ -----<br/>----- <u>선출한다</u>.</p>   |
| <p>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보궐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|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새로 위촉된 위원</u>-----<br/>-----.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담당 <u>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   | <p>⑤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팀장</u>-----<br/>-----.</p>   |
| <p><u>제6조·제7조</u> (생략)</p>   | <p><u>제6조·제7조</u>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<u>제8조</u>(회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<u>관계기관</u>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| <p><u>제8조</u>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관계 기관</u>-----<br/>-----.</p> |
| <p><u>제9조</u>(수당 등)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<u>대해서는</u>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      | <p><u>제9조</u>(수당 등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대하여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   |
| <p><u>제10조</u>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·②·③·④(생략)</p>   | <p><u>제10조</u>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·②·③·④(현행과 같음)</p>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<u>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</u><br/>         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<u>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</u>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 <u>위임 규칙</u> 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.</p> <p>②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 <u>위탁 받은 자</u>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u>제12조 (생략)</u></p>  | <p><u>제12조 (현행과 같음)</u></p>   |

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18조(특별임용)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.
-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,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8조의2(공공기관 평가 반영) ①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### 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36조(공무원의 특별임용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.

-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인사혁신처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,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-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 중 제1호에 해당함.

####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# ○ 사 유

-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에 있어 채용형태(공무원, 임기제, 공무원직, 기간제 등)와 채용범위는 조례개정 이후 심의, 결정되는 바
-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- 또한,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### ○ 작성자

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(☎043-220-2610)